

## 미국의 연방 동물보호법

정보신청기관 : 농림수산부

### I. 들어가는 말

인간과 동물의 관계는 과거 인간의 도구로서의 역할이 강조되던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서 벗어나, 최근에는 동물보호의 목적에 대한 새로운 논의들로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인간중심적으로 동물을 인도적으로 보호하는 문제인가, 아니면 동물에게도 고유의 권리를 인정하여 인간으로부터의 침해를 배척할 수 있는 동물권을 인정하자는 논의까지도 존재한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은 19세기부터 미국 및 일부 유럽국가에서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다. 과거에는 동물을 인간보다 열등한 존재로 인간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존재로 인식했고 동물은 법적으로 동산으로 간주되었다. 따라서 동물 자체는 법적으로 인식할 만한 이익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19세기 중후반을 거치면서 이러한 인식은 점차 변하기 시작하였고 현재 동물보호를 위한, 예컨대 동물학대를 금지하는 등의 법률이

제정·시행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동물보호 선진국인 미국의 현행 연방 동물보호법들을 소개하고, 각각의 주요한 미국의 연방 동물보호법에 대하여 살펴본다.

### II. 미국의 연방동물보호법 개관

현재 미국의 동물보호에 관한 연방법은 93개가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별도의 동물보호법이 존재하지 않고 다음의 표와 같이 개별적으로 존재한다. 다음 장에서는 대표적인 연방동물보호법인 Adoption of Military Animals, 10 U.S.C. § 2583(군용동물 입양법), Animal Damage Control Act, 7 U.S.C. §§ 426-426c(동물피해조정법), Animal Welfare Act, 7 U.S.C. §§ 2131-2159(동물복지법), Animal Fighting, 7 U.S.C. §2156, 18 U.S.C §49(동물싸움에 관한 사항), Humane Slaughter Act, 7 U.S.C. §§1901-1906(인도적 도

살법), Marine Mammal Protection Act of 1972, 16 U.S.C. §§1361-1423(해양포유동물법), Twenty-Eight Hour Law, 49 U.S.C. §80502 (28시간법)을 소개한다.

현행 미국의 연방동물보호법(알파벳 순서)
Adoption of Military Animals, 10 U.S.C. § 2583
African Elephant Conservation Act, 16 U.S.C. §§ 4201-4245
Agriculture Appropriations Act, 2006, P.L. 109-97 (2005), and subsequent appropriations acts
Airborne Hunting Act, 16 U.S.C. § 742j-1
Alaska National Interest Lands Conservation Act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42 U.S.C. §§ 12101-12213
Anadromous Fish Conservation Act, 16 U.S.C. §§ 757a-757f
Animal Damage Control Act, 7 U.S.C. §§ 426-426c
Animal Disease Risk Assessment, Prevention, and Control Act of 2001, P.L. 107-9 (2001)
Animal Enterprise Terrorism Act, 18 U.S.C. § 43
Animal Health Protection Act, 7 U.S.C. §§ 8301-8321
Animal Welfare Act, 7 U.S.C. §§ 2131-2159
Animal Fighting, 7 U.S.C. § 2156, 18 U.S.C. § 49
Antarctic Conservation Act of 1978, 16 U.S.C. §§ 2401-2412
Antarctic Marine Living Resources Convention Act of 1984, 16 U.S.C. §§ 2431-2444
Asian Elephant Conservation Act of 1997, 16 U.S.C. §§ 4261-4266
Atlantic Coastal Fisheries Cooperative Management Act, 16 U.S.C. §§ 5101-5108
Atlantic Salmon Convention Act of 1982, 16 U.S.C. §§ 3601-3608
Atlantic Striped Bass Conservation Act, 16 U.S.C. §§ 5151-5158
Atlantic Tunas Convention Act of 1975, 16 U.S.C. §§ 971-971k
Bald and Golden Eagle Protection Act, 16 U.S.C. §§ 668-668d
Captive Wildlife Safety Act: See Lacey Act Amendments of 1981
Chimpanzee Health Improvement, Maintenance, and Protection Act, 42 U.S.C. § 287a-3a

Commercial Transportation of Equine for Slaughter, 7 U.S.C. § 1901 note
Department of Defense Appropriations Acts
Departments of Labor, Health and Human Services, and Education, and Related Agencies Appropriations Act for the Fiscal Year Ending September 30, 1993
Depictions of Animal Cruelty, 18 U.S.C. § 48
Dingell-Johnson Sport Fish Restoration Act, 16 U.S.C. §§ 777-777f
Disposition of Unfit Horses And Mules, 40 U.S.C. § 1308
Dog and Cat Protection Act of 2000, 19 U.S.C. § 1308
Dolphin Protection Consumer Information Act, 16 U.S.C. § 1385
Driftnet Impact Monitoring, Assessment, and Control Act of 1987, 16 U.S.C. § 1822 note
Eastern Pacific Tuna Licensing Act of 1984, 16 U.S.C. §§ 972-972h
Endangered Species Act, 16 U.S.C. §§ 1531-1544
Fair Housing Act, 42 U.S.C. § 3604
Federal Hazardous Substances Act, 15 U.S.C. §§ 1261-1275
Federal Law Enforcement Animal Protection Act of 2000, 18 U.S.C. § 1368
Fish and Wildlife Conservation Act, 16 U.S.C. §§ 2901-2912
Fish And Wildlife Coordination Act, 16 U.S.C. §§ 661-667d
Fishery Conservation Amendments of 1990, P.L. 101-627
Food, Agriculture, Conservation, and Trade Act of 1990, 7 U.S.C. § 5801(a)(5)
Fur Seal Act of 1966, 16 U.S.C. §§ 1151-1175
Great Ape Conservation Act of 2000, 16 U.S.C. §§ 6301-6305
High Seas Fishing Compliance Act of 1995, 16 U.S.C. §§ 5501-5509
Horse Protection Act, 15 U.S.C. §§ 1821-1831
Humane Slaughter Act, 7 U.S.C. §§ 1901-1906
ICCVAM Authorization Act of 2000, 42 U.S.C. §§ 2851-2851-6
International Dolphin Conservation Act of 1992, P.L. 102-523
International Dolphin Conservation Program Act, P.L. 105-42 (1997)

Lacey Act, 18 U.S.C. §§ 41-48 (see also Animal Enterprise Protection Act of 1992, and Depictions of Animal Cruelty)
Lacey Act Amendments of 1981, 16 U.S.C. §§ 3371-3378
Magnuson-Stevens Fishery Conservation and Management Act, 16 U.S.C. §§ 1801-1891d
Marine Mammal Protection Act of 1972, 16 U.S.C. §§ 1361-1423h
Marine Plastic Pollution Research and Control Act of 1987, P.L. 100-220, Title II
Marine Protection, Research, And Sanctuaries Act of 1972, 16 U.S.C. §§ 1431-1445b
Marine Turtle Conservation Act of 2004, 16 U.S.C. §§ 6601-6607
Migratory Bird Conservation Act, 16 U.S.C. §§ 715-715s
Multinational Species Conservation Fund, 16 U.S.C. § 4246
National Agricultural Research, Extension, and Teaching Policy Act of 1977, 7 U.S.C. §§ 3191-3202
National Fish and Wildlife Foundation Establishment Act, 16 U.S.C. §§ 3701-3710
National Housing Act, 12 U.S.C. § 1701r-1
National Wildlife Refuge System Administration Act of 1966, 16 U.S.C. §§ 668dd-668ee
Neotropical Migratory Bird Conservation Act, 16 U.S.C. §§ 6101-6109
Nonindigenous Aquatic Nuisance Prevention and Control Act of 1990, 16 U.S.C. §§ 4701-4751
North Pacific Anadromous Stocks Act of 1992, 16 U.S.C. §§ 5001-5012
Northern Pacific Halibut Act of 1982, 16 U.S.C. §§ 773-773k
Northwest Atlantic Fisheries Convention Act of 1995, 16 U.S.C. §§ 5601-5612
Pacific Salmon Treaty Act of 1985, 16 U.S.C. §§ 3631-3645
Pacific Whiting Act of 2006, 16 U.S.C. §§ 7001-7010
Partnerships for Wildlife Act, 16 U.S.C. §§ 3741-3744
Pets Evacuation and Transportation Standards Act of 2006, 42 U.S.C. §§ 5170b(a)(3)(J), 5196(e)(4), 5196(j)(2), 5196b(g)
Pittman-Robertson Wildlife Restoration Act, 16 U.S.C. §§ 669-669k
Public Health Service Act, 42 U.S.C. §§ 283e, 289d
Recreational Hunting Safety and Preservation Act of 1994, 16 U.S.C. §§ 5201-5207
Rehabilitation Act of 1973: Se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Rhinoceros and Tiger Conservation Act of 1994, 16 U.S.C. §§ 5301-5306

Salmon and Steelhead Conservation and Enhancement Act of 1980, 16 U.S.C. §§ 3301-3345
Shark Finning Prohibition Act, 16 U.S.C. § 1822 note
Sikes Act, 16 U.S.C. §§ 670a-670o
South Pacific Tuna Act of 1988, 16 U.S.C. §§ 973-973r
Tariff Act of 1930, 19 U.S.C. § 1527
Tuna Conventions Act of 1950, 16 U.S.C. §§ 951-962
Twenty-Eight Hour Law, 49 U.S.C. § 80502
United States Housing Act of 1937: See National Housing Act
United States-Russia Polar Bear Conservation and Management Act of 2006, 16 U.S.C. §§ 1423-1423h
Wendell H. Ford Aviation Investment and Reform Act for the 21st Century, 49 U.S.C. § 41721
Western and Central Pacific Fisheries Convention Implementation Act, 16 U.S.C. §§ 6901-6910
Whale Conservation And Protection Study Act, 16 U.S.C. §§ 917-917d
Whaling Convention Act of 1949, 16 U.S.C. §§ 916-916i
Wild Bird Conservation Act of 1992, 16 U.S.C. §§ 4901-4916
Wild Free-Roaming Horses and Burros Act, 16 U.S.C. §§ 1331-1340
Wildlife and Sport Fish Restoration Programs Improvement Act of 2000, 16 U.S.C. §§ 669-669k
Yukon River Salmon Act of 1995, 16 U.S.C. §§ 5701-5709

### Ⅲ. 주요 연방 동물보호법

#### 1. Adoption of Military Animals, 10 U.S.C. § 2583(군용동물 입양법)

군용동물입양법은 국방부장관에게 국방부 군용동물을 다음과 같은 경우에 다른 사람에게 입양할 수 있게 허락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1) 군용동물로 이용 가능할 수 없는 경우(수명 및 기능) (2) 군용동물이 목적에 의한 이용이 가능하지만 그 동물이 비정상적이거나 기이한 행

동을 하는 경우 국방부 장관의 결정으로 가능하고 (3) 국방부의 군용동물 수요가 필요 이상인 경우 군용동물의 입양을 허락할 수 있다.

군용동물입양법은 군용동물을 군견(군용견) 혹은 국방부 소유의 말로 정의하고 있다. 군용동물입양법이 2000년에 처음으로 제정되었을 때에는 군견에게만 적용되었으나 국방부 소유의 말을 포함시키기 위하여 2006년에 개정하였다. 군용동물입양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국방부의 정책에 따라 이러한 군용동물을 길게는 1년 동안 감금을 하였고, 감금 이후 안락사를 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였다.<sup>1)</sup>

## 2. Animal Damage Control Act, 7 U.S.C. §§ 426-426c(동물피해조정법)

동물피해조정법은 다음의 예와 같이 피해를 입히는 동물, 예컨대 사자, 늑대, 살쾡이, 야생견, 들쥐 및 기타 농업, 원예업, 임업, 목축업에 해를 입히는 동물에 대한 박멸 혹은 퇴치의 가장 좋은 방법을 발견하고, 알리기 위하여 조사, 실험 및 검사의 수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농무부 장관은 이러한 동물에 대한 조사, 실험 및 검사의 수행이 가능하도록 허락할 수 있다.

동물피해조정법은 1931년에 제정되었는데,

제정 당시에는 농무부 장관에게 이러한 권한이 주워졌으나, 1939년 법 개정을 통하여 잠시 내무부장관에게 이전되었고, 1985년 법 개정을 통해 농림부장관이 다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1987년 개정을 통해 “농림부장관은 도시의 설치류(쥐와 같이 앞니가 날카로운 동물)를 잡는 경우를 제외하고”라는 사항을 추가하였다.<sup>2)</sup>

## 3. Animal Welfare Act, 7 U.S.C. §§ 2131-2159(동물복지법)

동물복지법은 농무부장관에게 “판매자, 연구기관 그리고 출품자들이 동물을 수송, 관리, 처치할 때 윤리적인 취급을 관리할 기준”을 공표할 권한을 부여한다.<sup>3)</sup> 이러한 기준에는 다음 사항이 꼭 포함되어야 하는데 “동물관리 및 취급, 안락사, 마취제, 진통제 및 진정제의 적절한 이용 등 동물의 고통과 불안을 최소화하고 보장할 수 있는 실험과정의 실행, 동물관리, 취급” 등의 요구<sup>4)</sup>이다.

또한 동물복지법은 장관에게 다음 사항을 요구한다. “장관은 상업적인 수송을 관리하기 위하여, 정부기관, 정부부처, 경매 운영자, 전시회 출품자, 연구기관, 판매인에 인도된 동물의 취



1) See 146 Cong. Rec. H 9599 (daily ed. October 10, 2000).  
2) P.L. 100-202, 101 Stat. 1329-331.  
3) 7 U.S.C. § 2143(a)(1).  
4) 7 U.S.C. § 2143(a)(3)(A).

급, 관리 및 처치하기 위한 기준을 공표해야 한다. 그리고 상업적인 목적을 위하여 수송하는 경우, 동물취급, 관리, 처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중개인, 항공회사 혹은 다른 운송업자를 통제하기 위한 기준을 공표해야 한다. 장관은 운반상자, 사료, 음수, 휴식, 환기, 온도 및 관리에 관한 요건을 포함하여 상업적인 운송 중 동물의 윤리적 취급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결정으로 규정과 명령을 공표할 권한을 가진다.”<sup>5)</sup>

동물복지법에서 동물이란 “생사의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개, 고양이, 원숭이(사람이 아닌 영장류), 기니피그, 햄스터, 토끼 또는 장관이 연구, 시험, 실험 또는 전시의 목적에 사용되거나 사용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온혈동물 또는 애완동물을 의미한다. 예컨대 식용, 번식, 관리, 생산효율, 식용이나 품질향상을 위해 연구에 사용할 목적이거나 이용한 예정인 가금류나 가축은 제외된다. 또한 ‘개’란 용어의 경우에는 사냥, 경비, 육종을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포함한 모든 종을 의미한다.”<sup>6)</sup> 특히 연구에 이용할 목적으로 사육된 새, 라투스류의 쥐, 마우스류의 쥐는 2002년 이전에는 온혈동물로서 동물복지법의 보호대상이었으나 2002년 법 개정으로 인하여 동물복지법의 보호대상에서 배제되었다.<sup>7)</sup>



5) 7 U.S.C. § 2143(a)(4).

6) 7 U.S.C. § 2132(g).

7) P.L. 107-171 (2002), § 10301

8) 7 U.S.C. § 2143(b).

9) 7 U.S.C. § 2133.

모든 연구기관이 최소한 하나 이상의 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 각 연구기관의 장은 각각의 위원회의 위원을 임명해야 하고, 위원은 3명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위원들은 동물의 관리, 취급 및 연구기관의 필요에 따라 결정한 연구의 수행을 평가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연구 기관에서 사용하는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대변할 수 있어야 한다.<sup>8)</sup>

동물복지법은 농무부 장관이 규정한 형태와 방법으로 신청한 신청서에 대해 판매업자와 출품자에게 면허제공하고 본 법 23항에 준해서 수수료를 제정한다.<sup>9)</sup> 그리고 이런 면허취득이 면제가 되지 않는 한, 동물복지법에 따라 농무부 장관이 허락한 판매인이나 전시회 출품자로서 유효한 면허를 소지한 자나 동물복지법 12항에 준거한 경매 운영자를 제외하고 연구기관이 불특정 개인에게서 개나 고양이를 구매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 법에서 판매업자란 운송업자로서 아래의 (1), (2)의 매매의 체결이나 매매를 제외한 상업적으로 보수 또는 이득을 위해 수송 또는 운송 목적으로 배달하는 자를 의미한다. (1) 생사여부에 관계없이 연구, 교육, 전시 또는 애완동물로 이용하기 위한 개나 동물 (2) 아래의 사항에 포함

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한 사냥, 경비 또는 번식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개.<sup>10)</sup>

이 법에서 출품자(Exhibitor)는 상업적으로 구매된 어떤 동물을 전시하는 자 그리고 이익을 위한 운영과 관계없이 사육제, 서커스, 동물원 전시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소매상, 조직화된 스폰서, 가축 품평회, 로데오, 순종 개와 고양이 품평회, 그리고 장관이 정한 바에 따라 과학과 농업 기술의 발전을 위한 여타 품평회와 전시회는 포함되지 않는다.<sup>11)</sup>

동물보호법, 농무부 장관이 공포한 규정, 규칙이나 기준을 위반한 판매인, 전시회 출품자, 연구기관, 경매 운영자는 2,500달러 이하의 민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농무부 장관은 이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 위반자가 통보나 진술된 위반사항에 관해 소명할 기회를 받지 않는 한, 범칙금은 산정되지 않고 중지명령은 내려지지 않는다. 법무부 장관은 위반자의 사업규모, 개인의 성실도, 과거의 위반사항을 고려하여 적절한 범칙금을 정한다. 법무부 장관은 모든 시민의 범칙금을 조정한다.<sup>12)</sup> 그러나 판매인, 전시회 출품자, 경매 운영자가 고의로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500달러 미만

의 벌금형을 받거나 벌금과 징역형 2가지를 다 받을 수 있다.<sup>13)</sup>

#### 4. Animal Fighting, 7 U.S.C. § 2156, 18 U.S.C § 49(동물싸움에 관한 사항)

PL. 110-234, § 14207(2008)에 의해 최근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다음의 사항을 금지하고 있다.

- (1) 동물을 고의로 동물격투기 사업에 참여시키거나 후원하는 것을 금지한다.<sup>14)</sup>
- (2) 동물격투기 사업에 이용할 목적으로 어떤 동물이나 개를 보유하고 이러한 동물의 수송을 목적으로 하여 타인에게서 입수하거나, 타인이 고의로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또는 수송하거나 배달하는 것을 금지한다.<sup>15)</sup>
- (3) 확대된 동물격투기 사업이나 이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주 내의 정부대행기관이나 미국 우편국의 시스템으로 우편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한다.<sup>16)</sup>

이를 위반하는 사람은 각 위반 사항에 대하여 5,000달러 미만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sup>17)</sup>

‘동물격투기 사업’의 의미는 최소한 두 동물



10) 7 U.S.C. § 2132(f).  
11) 7 U.S.C. § 2132(h).  
12) 7 U.S.C. § 2149(b).  
13) 7 U.S.C. § 2149(d).  
14) 7 U.S.C. § 2146(a).  
15) 7 U.S.C. § 2146(b).  
16) 7 U.S.C. § 2146(c).  
17) 7 U.S.C. § 2146(e).

의 싸움에 관련된 이벤트로 물새, 조류, 너구리, 여우 사냥처럼 동물사냥에서 적어도 동물 한 마리 이상을 이용에 관여하는 최초 목적인 활동이 아닌 스포츠, 내기, 오락을 목적으로 수행되는 격투기 사업을 말한다.<sup>18)</sup>

농무부 장관이나 그 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은 위 사항에 저촉되거나 위반 중인 사람의 위반행위를 증명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정부기관과의 공동합의하에 농무부 장관은 이러한 수사진행에 있어 미 연방 수사국, 미 재무성 및 기타 연방, 주 및 지방정부의 법 집행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동물의 포획 및 수색에 대한 영장은 연방관사나 동물이 위치한 지역 내의 치안관사가 발행한다. 동물이 구류 상태에 있는 동안에는, 수의학적 치료를 포함한 필요한 관리가 제공된다. 법원이 명령한 대로 법적 판단으로 몰수된 동물의 관리를 위해 미 정부가 지불한 비용은 소유주가 부담한다.<sup>19)</sup>

#### 5. Humane Slaughter Act, 7 U.S.C. §§ 1901-1906(인도적 도살법)

인도적 도살법은 가축을 도살함에 있어서 인도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18) 7 U.S.C. § 2146(g).

19) 7 U.S.C. § 2146(f).

20) 7 U.S.C. § 1901.

21) 7 U.S.C. § 1902(a).

22) 7 U.S.C. §§ 1902, 1096.

인도적 도살법은 동물에게 가해지는 불필요한 고통을 방지하고 도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개선된 작업환경의 제공 및 제품의 질적 향상도모 등을 목적으로 하여 가축을 도살할 때 반드시 인도적인 방법인 방법으로 도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sup>20)</sup>

이 법에서 인도적인 방법의 의미는 “소, 송아지, 말, 노새, 양, 돼지 기타 가축을 도살함에 있어서 이들을 쇠사슬로 속박하거나 들어올리거나 내던지거나 절단하기 전에 일격에 또는 총살로, 또는 전기적, 화학적 또는 기타 신속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동물이 고통을 느낄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sup>21)</sup>

그러나 동 법에서는 종교적 의식으로써 행해지는 도살과 가금류의 도살에는 예외를 인정한다.<sup>22)</sup>

#### 6. Marine Mammal Protection Act of 1972, 16 U.S.C. §§ 1361-1423(해양포유동물법)

1972년 제정된 이 법률은 멸종 위기에 처한 고래를 보호하고, 상업적 어업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잡히는 돌고래의 희생을 감소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상업성이 높은 황다랑어를 잡기 위하여 참치

선단들은 큰 후릿그물(purse-seine)을 사용한 어획방법을 이용하였다. 이러한 방식의 어획방법은 황다랑어가 돌고래 무리와 어울려 다니는 것에 착안하여 만든 어획방법으로, 돌고래무리를 둘러싸고 큰 그물을 투척한 뒤 어선이 원형을 그리면서 그물을 좁히는 방법으로 참치어업에 큰 성과를 가져왔으나 그 과정에서 많은 돌고래의 희생을 가져왔다. 이와 같이 참치어업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돌고래의 희생을 줄이기 위하여 해양포유동물보호법에 따라 선단에 의하여 희생 가능한 돌고래 수의 상한을 정하여 시행함으로써 미국선단에 의한 돌고래의 희생이 감소되었다.

이 법은 모든 포유동물을 포획하는 행위 혹은 포유동물의 생산품을 통한 수입을 일시 중단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단 내무부장관 또는 상무장관이 다음과 같은 경우 예외적으로 포획 또는 수입의 허락을 승인할 수 있다.

(1) 과학연구 및 공공전시를 위한 경우 (2) 부수적으로, 상업적인 어획 과정에서와 (3) 자원의 보전 및 보호의 원칙과 조화된 경우

또한 이 법은 과학연구를 위하여 허가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해양포유류를 수입하는 것을 금

지할 수 있다.

(1) 임신한 (2) 간호가 필요하거나 생후 8개월 미만 (3) 멸종 또는 장관에 의해 지정된 범주의 동물 혹은 (4) 장관에 의해 비인도적으로 생각되는 방식

이 법은 또한 포유동물 위원회를 설립하도록 하는데 포유동물의 보전과 보호에 관한 사회적 관심을 대변하고 연구할 의무를 진다.<sup>23)</sup>

## 7. Twenty-Eight Hour Law, 49 U.S.C. § 80502(28시간법)

동물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28시간법은 1873년에 처음으로 제정<sup>24)</sup>되었다. 이후 1906년에 개정<sup>25)</sup>되었다. 1906년 법은 폐지되었고 다시 개정의 형태로 1994년에 제정<sup>26)</sup>하게 되었다.

28시간법은 미국의 각 주 사이 또는 미국영토 내에서 동물의 운송을 담당하는 철도운송업자, 속달운송업자, 일반운송업자 또는 선박의 선장 등에게 다음의 사항을 하도록 규정하였는데, 동물에게 충분한 음식과 물을 제공하도록, 그리고 휴식 없이 연속적으로 28시간 이상을 운송 수단이나 선박에 가둬 두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다.<sup>27)</sup>



23) 16 U.S.C. §§ 1401-1402.

24) Ch. 252, 42d Cong., 17 Stat. 584, R.S. §§ 4386-4389.

25) Ch. 3594, 59th Cong., 34 Stat. 607.

26) P.L. 103-272.

27) 49 U.S.C. § 8502 (a)(1).



또한 운송업자들은 운송 중에 있는 동물을 가둬 둔 장치에서 내리게 하고 이들에게 음식과 물 그리고 최소한 5시간 동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우리를 제공해야 한다.<sup>28)</sup> 단, 운송수단이나 선박 내에 이미 충분한 음식, 물 및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sup>29)</sup>

28시간법은 28시간의 제한기간에 대하여 다음 사항에서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1) 양을 가둔 지 28시간째 되는 때가 저녁인 경우 추가적으로 연속하여 8시간 동안 더 가둬 둘 수 있다.<sup>30)</sup> (2) 예기치 못한 또는 피치 못한 사유가 발생하여 동물을 가둬 둔 곳에서 내릴 수 없는 경우, 운송 중인 동물을 28시간 이상 가둬 둘 수 있다.<sup>31)</sup> (3) 운송 중에 있는 동물을 가둔 사람이나 주인이 요구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더 8시간을 연장하여 총 36시간까지 가둬 둘 수 있다.<sup>32)</sup>

28시간법은 법무부장관에 의해 집행되는데, 동법을 위반한 사실을 인지한 장관은 민사소송을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이때 벌금은 최소 100달러 이상 최대 500달러 이하까지 징수할 수 있다.<sup>33)</sup>

#### IV. 맺는 말

미국은 대체로 19세기 초반부터 20세기 중반까지 동물보호에 대한 입법적 틀은 완성하여 시행해 오고 있다. 연방 동물보호법들은 특정형태의 행위로부터 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정, 시행 중에 있으나 동물학대 및 중대한 의무태만행위 등 주요한 사항은 주법에 위임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연방동물보호법에서는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법만 재정된 것이 아니라, 위에서 언급한 Animal Damage Control Act, 7 U.S.C. §§ 426-426c(동물피해조정법)같이 동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법도 제정되어 있다.

미국의 동물보호법은 연방법에서 93개의 법률로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으나, 주요한 내용, 특히 동물학대금지에 관한 사항들은 각 주법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다.

황 선 훈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인턴 연구원)



28) 49 U.S.C. § 8502 (b)

29) 49 U.S.C. § 8502 (c)

30) 49 U.S.C. § 8502 (a)(2)

31) 49 U.S.C. § 8502 (a)(2)(A).

32) 49 U.S.C. § 8502 (a)(2)(B)

33) 49 U.S.C. § 8502 (d)